



제43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아 정의에 외국인 유아 명시 >

■ 송재봉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94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유아 정의에 외국인 유아 명시	2
[참고자료 1] 2026학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안) 사업 개요(교육부)	10
[참고자료 2] 2026학년도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계획 일부(경기도)	12
[참고자료 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유아 대상 유아학비 지원 관련 조례(서울시)	14
[참고자료 4]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례규정 입법례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송재봉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3. 27.

3. 회부연월일 : 2026. 3.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며, 유치원 입학 대상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아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아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의에 포함하여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Ⅲ. 검토의견

1. 유아 정의에 외국인 유아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유아의 정의에 외국인 유아를 명시함으로써 외국인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외국인 유아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u>어린이</u> 를 말한다. 2.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 <u>어린이</u>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어린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 6.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1호 및 제11조¹⁾에서는 “유아”를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 정의하고, 유치원 입학 자격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및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²⁾에서는 모든 아동이 ①교육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고, ②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도록 이에 관한 협약당사국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유치원 입학 대상인 만 3세~5세 외국인 유아 수는 총 21,309명(등록 외국인³⁾ 유아 기준, 미등록 외국인⁴⁾ 미집계)으로 추정되고, 유치원에 입학한 아동은 총

1)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제11조(입학) ①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②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생략)

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3호 및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4호(공동) (2017): 국제이주 맥락에서의 아동 인권에 관한 출신국, 경유국, 목적국 및 귀환국에서의 국가의 의무」

59. 국제이주의 맥락에 있는 모든 아동은,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유아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및 직업훈련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와 모든 측면의 교육에 대해 완전한 접근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각국이 모든 이주 아동에게 그들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양질의 통합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주 아동은 필요한 경우 대안 학습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시험에 완전하게 참여하며 자신의 학업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3)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있는 자를 의미함. 외국인등록번호는 외국인이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부여되며, 국내거소신고번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할 때 부여되는 번호임.

4)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한국에 거주하는 자를 의미함.

3,567명으로 집계됨.

- 참고로,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통계는 법무부와 교육부가 각각 외국인 유아 수와 유치원 재학 외국인 유아 수를 분절적으로 집계하고, 그 집계 기준(법무부: 등록 외국인 기준, 교육부: 등록·미등록 외국인 유아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전체 외국인 유아 중 유치원 재학 비율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⁵⁾.

[만 3세~5세 등록외국인 유아 및 유치원 재학 현황]

(단위: 건, 기준: '25. 12..)

구분	2022	2023	2024	2025
외국인 유아	20,427	22,302	22,247	21,309
유치원 재학 유아	2,703	3,276	3,366	3,567

* 자료: 법무부, 교육부

** 외국인유아 현황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의거, 외국인등록을 완료한 대상자 현황을 기반으로 산출

*** 유치원 재학 유아 수는 외국인 등록 여부에 대한 구분 없이 현황 조사 중⁶⁾

- ☐ 그런데 현재 3~5세 유아 및 취학유예자에 해당하면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든지 유치원 입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현행법상 유아에 외국인 유아의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 유아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실정임.

- ☐ 이에 개정안은 유아의 정의에 외국인 유아를 명시하여 외국인 유아의 유치원 입학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5) “외국인 아동 생애출발선 ‘보육’에서부터 차별·배제 여전”, 메디컬투데이, 2023. 10. 9.

6)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유치원 입학이 가능함에 따라 별도 구분 없이 현황 조사 중

이는 외국인 유아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참고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75조⁷⁾에 따라 서류 자격과 관계 없이 외국인이 초·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입학 및 전학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외국인 유아에 대한 현행법 적용 범위를 개정 취지에 맞게 설정할 필요

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 ④ (생략)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편입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 또는 학생
2. 그 밖에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중학교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아동이나 학생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③ · ④ (생략)

요가 있음. 개정안은 “유아”라는 용어를 현행법 모든 규정에서 동일하게 해석하도록 하는 정의 규정에 외국인 유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외국인 유아의 유치원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개정 취지와 달리 무상교육 등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외국인 유아의 요건에 국내 거주 요건을 추가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유치원 입학 자격은 체류, 거주, 외국인의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3~5세 유아 및 취학유예자로 운영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유아의 요건에 국내 거주 요건을 규정할 경우 단기 체류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 등 일부 외국인 유아가 제외되어 오히려 외국인 유아의 입학 자격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법문의 중의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해석상 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의 법문 중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관형어의 경우 그 수식 범위가 모호하여 개정안이 2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바,

해당 관형어가 “대한민국의 국민”을 수식하는 것으로 볼 경우 개정 취지와 달리 외국인 유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인 재외국민⁸⁾ 유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참고로, 법률 내 용어의 통일성을 고려하면 현행법 제16조⁹⁾에 따른 입

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 6. (생략)

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외국인 유아 대상 무상교육 지원은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의 필요성, 복지수요 증가로 인한 재정 부담, 타 사회보장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법문 기준으로 본다면 외국인 유아에 대해서 무상교육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외국인의 경우 최상위 법 규범인 헌법¹⁰⁾에서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¹¹⁾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

9) 「유아교육법」

제16조(외국인유치원) ① “외국인유치원”이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유치원을 말하며, 외국인유치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1항·제2항 단서·제3항,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7조, 제18조제2항,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8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10) 「대한민국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11)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2. ~ 3. (생략)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 6. (생략)

제8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례규정을 통해 국내에 합법 체류하는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도 일부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하고는 있으나, 영유아 또는 아동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외국 국적 영유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제도는 없는 상황임. <참고자료 4: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위한 특례규정 입법례>

- 참고로,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 등 보육료 지원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¹²⁾이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 중임.

추가로, 현재 17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는 외국인 유아에 대해서 이미 아래와 같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공립·사립 유치원 만 3세~5세 유아학비 지원 개요]

(기준: '26. 6월 기준.)

구분	국민 대상	외국인 대상
대상	대한민국 국민 * 예외적으로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포함	해당 지자체 거주 등록 외국인 * 인천교육청, 강원교육청, 전북교육청은 미등록 외국인까지 지원
금액	① 유아학비(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 ② 방과후과정비(공립 5만원, 사립 7만원) ③ 3~5세 교부금 추가지원(5만원) ④ 4~5세 무상교육비(공립 2만원, 사립 11만원)	좌동
근거	「유아교육법」, 「영유아특별회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등
재원	국비, 지방비	지방비

* 자료: 교육부

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907,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또한,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¹³⁾에 따르면,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미등록 외국인 유아의 규모 및 신규 진학 수요의 불확실성 등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분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음.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외국인 유아의 입학 자격 명시에 대해서는 ①현행 유치원 입학 대상에서 외국인 유아를 달리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 ②‘대한민국 거주’ 요건 명시 시 단기 체류 외국인 유아 및 미등록 외국인 유아가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외국인 유아 대상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①현행 영유아 관련 사회보장제도에서 그 대상 국민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 ②17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외국인 유아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이미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시·도교육청(세종, 강원, 서울, 경기)

- 개정안에 따른 ‘대한민국 거주’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7

13) 무상교육 대상 인원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포함되어 있어 그 규모 및 신규 진학 수요가 불확실하고, 현재 서울, 경기, 충청남도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조례에 근거하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분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유아교육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추진배경 및 목적

- (유아학비)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추가 학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 ※ 국·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 대해 우선 입학 기회 보장
- (유아학비·보육료 추가지원) 「유보통합 추진계획(‘23.1.30.)」에 따라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학비·보육료 단계적* 추가 지원

* 지원대상 : 5세(‘24년) → 4~5세(‘25년) → 3~5세(‘26년)

□ 2026년 지원내용

(단위 : 원)

구분	(유치원) 유아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누리운영비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총 지원금
국·공립 유치원	100,000	50,000	50,000	200,000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280,000	70,000	50,000	400,000

※ 위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외에 소득요건 등 조건에 따라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 **세부 지원내용** ('26.3.1.부터 적용)

○ 유아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5세	2020.1.1.~2020.12.31.	100,000	280,000	280,000
	4세	2021.1.1.~2021.12.31.			
	3세	2022.1.1.~2023.2.28.			
방과후 과정비	3~5세	2020.1.1.~2023.2.28.	50,000	70,000	70,000

※ 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1월 예정)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 의한 미숙아인 경우, 생후 연령에서 조 기출생기간을 제외한 교정연령을 기준으로 입학 및 재원 가능

○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구분	자격	지원액(원/월)	비고
저소득층 유아 학비지원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 층, 한부모 가정	월 최대 200,000	- 학부모부담금(입학경비+교육과정비+방과후 과정비(특성화 교육활동비 포함)+기타경비) - 학부모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지원

구분	지원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유치원) 보육료 (어린이집)	3~5세	2020.1.1.~2023.2.2.	50,000	50,000	50,0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비고19에 따른 '26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 외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

I 지원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 경기도 관내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3~5세 외국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외국인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II 지원근거

- 「UN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1989. 11. 20.)
 □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2(사업)

III 지원내용

- 세부 지원내용 ※ 2026. 3. 1.부터 적용
 ○ 외국인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금액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금액(원/월)	
			공립	사립
유아학비 (유치원)	5세	2020. 1. 1. ~ 2020. 12. 31.	100,000	280,000
	4세	2021. 1. 1. ~ 2021. 12. 31.		
	3세	2022. 1. 1. ~ 2023. 2. 28.		
방과후과정비	3~5세	2020. 1. 1. ~ 2023. 2. 28.	50,000	70,000

※ '26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6-2호, 2026. 1. 21.)

※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및 정산은 연도별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지원금 산정방식을
 준용함

❖ 공립유치원 안내사항 ❖

- ☑ 입학금과 수업료는 「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집행
- ☑ **학부모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항목으로 우선 집행**
- ☑ 시설비 및 공공요금 등 유치원 운영을 위한 간접교육비로 집행 불가
- ☑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급식비 100% 지원으로 급식비 집행 불가
- ※ 단, 수익자부담으로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 발생 시, 유아학비로 급식비 집행 가능
- ※ 수업료 징수금액 및 납부 관련 사항은 소관부서(재무관리과)에 문의(「경기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동 시행규칙 참고)

□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 신청방법: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고,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유치원에 입학 시 방문하여 신청
 -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며, 신청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필요** (단, 국내거소신고증을 가진 경우, 신고증과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같음)
- 지원금 지급: 유아학비 신청에 따라 교육지원청 → 유치원 입금

❖ 외국인 유아학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

- ☑ 외국인 유아도 반드시 유아학비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 출결관리
- ☑ 정산은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출결사항을 기준으로 진행
- ☑ 재정여건상 신규 신청이 중단될 수 있음에 유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시행 2024. 5. 23.] [서울특별시조례 제9208호, 2024. 5. 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진흥 및 다문화학생들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0., 2024.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3.3.>

1. “다문화교육”이란 여러 나라의 다양한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와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3.3., 2024.5.23.>
2.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2.3.3., 2024.3.20.>
 - 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나. 그 밖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3. <삭제><2022.3.3.>

제3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3.20.>

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
2.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유아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7.22.]

제4조 ~ 제13조 (생략)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 “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한다)의 처우에 관하여는 제14조, 「난민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필요한 기타 생활지원
2. 고용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에 필요한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부는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 ⑩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① 재외동포 및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